

---

# 2026년 광주영화제작지원 사 업 공 고 문

---

2026. 2.

# 2026년 광주영화제작지원 사업공고문

## I. 사업 목적

- 역량있는 지역 영화인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영화 창제작 활성화
- 지역 내 영화인들의 지속가능한 영화 창제작을 위한 기회 제공

## II. 지원 내용

### 1. 지원분야 및 지원기간

구분	내용
지원분야	■ 독립영화제작지원 ①극영화[장·단편] ②다큐멘터리[장·단편]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11.30.까지

### 2.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극영화 분야	다큐멘터리 분야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 8편 내외 선정 예정</li> <li>-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편수 및 지원금 규모를 달리 할 수 있음</li> <li>※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1억 7천만 원 내 차등지급</th> <th colspan="2">8천만 원 내 차등지급</th> </tr> <tr> <th>&lt;장편 : 60분 이상&gt;</th> <th>&lt;단편 : 15분 이상&gt;</th> <th>&lt;장편 : 60분 이상&gt;</th> <th>&lt;단편 : 15분 이상&gt;</th> </tr> </thead> <tbody> <tr> <td>- 최대 1억원 이하</td> <td>- 최대 15백만원 이하</td> <td>- 최대 8천만원 이하</td> <td>- 최대 15백만원 이하</td> </tr> </tbody> </table>		1억 7천만 원 내 차등지급		8천만 원 내 차등지급		<장편 : 60분 이상>	<단편 : 15분 이상>	<장편 : 60분 이상>	<단편 : 15분 이상>	- 최대 1억원 이하	- 최대 15백만원 이하	- 최대 8천만원 이하	- 최대 15백만원 이하
	1억 7천만 원 내 차등지급		8천만 원 내 차등지급											
	<장편 : 60분 이상>	<단편 : 15분 이상>	<장편 : 60분 이상>	<단편 : 15분 이상>										
- 최대 1억원 이하	- 최대 15백만원 이하	- 최대 8천만원 이하	- 최대 1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이 개시된 작품 혹은 지원작 선정일 이전 촬영예정 작품은 신청 불가</li> </ul>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사항 : 광주광역시를 거주지로 한 감독(개인) 또는 사업장이 광주인 제작사</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lt;장편 : 60분 이상&gt;</th> <th>&lt;단편 : 15분 이상&gt;</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li> <li>※단, 감독(개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며, 선정 시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필수 이행</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감독(개인) 또는 제작사</li> </ul> </td> </tr> </tbody> </table>		<장편 : 60분 이상>	<단편 : 15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li> <li>※단, 감독(개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며, 선정 시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필수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감독(개인) 또는 제작사</li> </ul>								
	<장편 : 60분 이상>	<단편 : 15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li> <li>※단, 감독(개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며, 선정 시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필수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감독(개인) 또는 제작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는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모두 1년 이상 광주 거주</li> <li>※ 제작완료된 영화는 신청 불가하며, 최근 2년 연속 선정자는 동일 분야 신청 불가</li> </ul>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사 기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li> <li>■ 각 분야 중 1개 부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작 전부 심사 제외</li> <li>※ 신청인(사) 포함 주요스태프(연출, 제작,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구성이 확정 되어야 함</li> </ul>													

### 3. 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지원 내용
사전제작 (Pre-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기자재 임차비, 사전제작비, 개발진행비 등</li> </ul>
제작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관련 기자재 임차비, 스태프 및 배우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비 일체</li> </ul>
후반제작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반작업(편집, 녹음, DI, 음향, 자막)을 위한 용역비 등</li> </ul>
인건비성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1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li> <li>※ 지원사업 참여 주요인력(연출, 프로듀서 등)에 대한 참여율 기재는 필수</li> <li>* 동일 기간 내 참여율 100% 초과 불가</li> <li>* 중복 참여 100% 초과 확인 시 집행 불인정</li> </ul> </li> <li>■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집행 가능 (단, 고용주 부담금 제외)</li> <li>■ 인건비성 집행: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 (양식) 세부집행내역서 참조</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영화의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li> <li>■ 영화제작지원사업 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전 집행금액은 소급적용 불가</li> </ul> </li> <li>■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등 자산취득성 경비, 기자재 수리비용, 사무실 운영 경상비 등 집행불가</li> </ul>

### 4. 사업수행요건

구분	주요내용			
사업 수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의 변경은 불가</li> <li>■ 지원 받은자(사)는 2026년 11월 내 작품 제작 및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와 최종 편집본을 결과평가일 이전에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제출된 사업 결과물은 진흥원이 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결과물 형태</th> <th>제출 기일</th> </tr> </thead> <tbody> <tr> <td>           ① 최종 편집본 (USB 등 저장장치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1080 이상 동영상 파일(720P 이상) 1개</li> <li>※비디오 코덱의 경우 MP4파일 형태의 H.264(AVC)코덱 등 보편화된 코덱 활용 권장</li> <li>- 고화질 현장사진 30매 이상</li> </ul>           ②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및 실적 보고서 1부</li> <li>-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li> <li>- 증빙자료(공인회계사 정산(검증보고서) 포함)</li> </ul>           ③ 제작자 또는 제작사명의 저작권 등록증 1부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026.11.30.(월)까지 제출</td> </tr> </tbody> </table> <p>※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지원자의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p>	결과물 형태	제출 기일	① 최종 편집본 (USB 등 저장장치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1080 이상 동영상 파일(720P 이상) 1개</li> <li>※비디오 코덱의 경우 MP4파일 형태의 H.264(AVC)코덱 등 보편화된 코덱 활용 권장</li> <li>- 고화질 현장사진 30매 이상</li> </ul> ②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및 실적 보고서 1부</li> <li>-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li> <li>- 증빙자료(공인회계사 정산(검증보고서) 포함)</li> </ul> ③ 제작자 또는 제작사명의 저작권 등록증 1부
결과물 형태	제출 기일			
① 최종 편집본 (USB 등 저장장치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1080 이상 동영상 파일(720P 이상) 1개</li> <li>※비디오 코덱의 경우 MP4파일 형태의 H.264(AVC)코덱 등 보편화된 코덱 활용 권장</li> <li>- 고화질 현장사진 30매 이상</li> </ul> ②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및 실적 보고서 1부</li> <li>-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li> <li>- 증빙자료(공인회계사 정산(검증보고서) 포함)</li> </ul> ③ 제작자 또는 제작사명의 저작권 등록증 1부	2026.11.30.(월)까지 제출			

유의 사항

- 동일한 프로젝트로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작지원사업에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타 지원사업과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는 최대 100%를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음. 적발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약 시에 진행하는 **회계교육(사업비 집행) 등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 교육 미수 및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지원자)에게 있음
-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제작사 소유로 하며, 제작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상영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제공하여야 함
- 지원작은 크레딧 및 홍보물에 <2026년 광주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026년 광주영화제작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협약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취소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비고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1차 지원금 선정시 (70%)	협약일 ~ 2027. 02. 28.	협약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2차 지원금 계속시 (30%)		

## 5. 접수 및 신청서 제출

구분	주요내용						
접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 3. 5.(목) ~ 3. 11.(수) 14시까지 (7일)</li> <li>※ 접수기간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li> </ul>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접수: <b>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전화 확인</b></li> <li>※ 우편 및 대면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li> <li>신청문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담당자</th> <th>e-mail 접수</th> <th>확인 전화</th> </tr> </thead> <tbody> <tr> <td>김종현 수석</td> <td>film@gicon.or.kr</td> <td>062-350-9343</td> </tr> </tbody> </table>	담당자	e-mail 접수	확인 전화	김종현 수석	film@gicon.or.kr	062-350-9343
담당자	e-mail 접수	확인 전화					
김종현 수석	film@gicon.or.kr	062-350-9343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서류는 제공양식 (양식1), (양식2), (양식3) 필수 제출.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진흥원이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li> <li>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li> </ul>						

- 모든 제출서류를 **(양식1), (양식2), (양식3) 번호 순으로 정리 후 업로드. 압축하지 말 것, 파일 3개 업로드**
- 제출서류 파일 총 용량: 50MB 이내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택 제출] 신청작품의 컨셉 영상 90초 내외(필수 제출 아님, 제작계획서 내 <기획의도 및 시놉시스> 작성 부분 내 온라인 스크리너 정보 작성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양식1) 공통서류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저작권) 확인서(날인본)	
	④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지원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딧 증명	
	⑦ 사업자등록증,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시)	
	⑧ 주민등록등본(개인신청자, 제작사 참여시 대표자)	
	⑨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⑩ 제작계획서	
	⑪ 지원자 기본 정보(엑셀)	(양식3) 기본정보
참고	①~⑩ 서류는 PDF변환 후 제출 ⑪ 서류는 엑셀 파일 제출	

※발표평가자료(자유양식)는 **발표 평가 전 필요한 자료(PPT 등) 이메일 제출**

### Ⅲ. 추진일정 및 선정기준

#### 1.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공고 : 공고일 ~ 3. 11.(수) 14시까지	진흥원 홈페이지 등
	↓	
평가	접수 : 2026. 3. 5.(목) ~ 3. 11.(수) 14시까지	접수 : film@gicon.or.kr
	↓	
	1차 서류평가 : 3. 17.(화) 예정 결과 발표 : 3. 19.(목) 예정	결과발표 진흥원 홈페이지
	↓	
향후 일정	2차 발표평가 : 3. 24.(화) 예정 결과 발표 : 3. 30.(월) 예정	평가장소 별도 공지 결과발표 진흥원 홈페이지
	↓	
향후 일정	협약 및 회계교육 : 4. 1.(수) 예정	교육장소 별도 공지
	↓	
향후 일정	중간평가 / 결과평가 : 대면 평가 진행 - 중간 : 8~9월 중 / 결과 : 12월 중	평가장소 별도 공지

※ 상기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 2.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작품을 선정함
- 선정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70점 이상 작품에 한함
- 극영화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b>계</b>		<b>100</b>
제작 계획	▶ 시나리오의 작품성 및 참신성	60
예산 편성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서	30
제작 역량	▶ 신청자(사) 경력 및 신뢰도	10

### - 2차 발표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b>계</b>		<b>100</b>
제작 계획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 신뢰도	20
	▶ 시나리오 작품성 및 참신성	40
예산 편성	▶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영화제작 완성가능성 여부	30
제작 역량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

## ○ 다큐멘터리 선정기준

### - 1차 서류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b>계</b>		<b>100</b>
제작 계획	▶ 구성안 및 자료조사의 충실성 및 작품성	50
예산 편성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서	40
제작 역량	▶ 신청자(사) 경력 및 신뢰도	10

### - 2차 발표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b>계</b>		<b>100</b>
제작 계획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30
	▶ 영화제작 완성가능성 여부	40
예산 편성	▶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여부	20
제작 역량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

### 3. 평가제외 대상

구분	주요내용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li> <li>■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9에 의거, 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같은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li> <li>※ 지원 대상 작품으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함</li> <li>* 광주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기관의 지원을 받은 작품은 중복지원 불가</li> <li>■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li> </ul>

## IV. 지원금 관련 절차 및 규정

### 1. 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급시기 :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70%) 지급
  - 중간평가 '계속' 판정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2.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사업비는 반드시 과제 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 계좌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지원비로 상계할 수 없음
- 지원비 집행내역은 진흥원으로부터 상시 집행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해야 함
- 사업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승인 조치 후 집행되어야 하며, 승인 전 집행시 불인정 받아 향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는 집행되어야하며 사업예산 변경은 사업(협약)기간 종료 30일전 최종 변경 신청 필요
  - 승인 사항(관련규정검토) : 주요 제작진(프로듀서 등), 일정 및 예산 변경

- 회계(검증수수료)정산 비용은 예산 내 편성 가능하지만 이행보증 보험 발급비용은 편성 불가함
-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카메라 등)구입, 경상비, 수리비용 등은 편성 및 집행 불가함
- 지원금은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법인(진흥원에서 지정)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불인정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3.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최종 확인 된 경우에는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 수행 당사자 제재사유 발생(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지원금 부당사용, 기타 해약사유) 시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귀책사유 발생 시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기타 객관적 사실 등에 비추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 위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보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개인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관련규정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2.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 ※ 본 사업은 위 규칙 및 지침에 의해 수행·관리하며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 등 수행 당사자의 책임임

## V. 기타 의무사항

### 1. 제작환경 개선

- 선정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3에 따라 진흥원이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선정자(사)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사)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선정자(사)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

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선정자(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배우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 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별도 공지)

## 3.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선정자(사)는 지원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극장 개봉될 시 진흥원 지원작품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진흥원은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대상작품(또는 지원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을 시 선정자(사)는 해당 자료를 진흥원에게 제공하여야 함